#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08

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서미화·허성무·김영환

김예지 • 이해민 • 박용갑

박정현 · 안규백 · 권칠승

전현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이지만, 현재 많은 청년이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시장 불안정과 사회·경제적 양극화 속 에서 자립 실패,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.

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·은둔청년은 취업, 주거, 교육, 건강 등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, 이들에 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체계도 부재하였음.

생애주기에서 청년 시기는 사회진출과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, 이 시기에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아질 경우 결국 국가 전반의 활력 저하와 사회·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됨.

이에 가족돌봄청년, 고립·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"위기청년"이란 가족돌봄청년, 고립·은둔청년, 자립준비청년 및 그 밖에 사회·경제·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, 학업,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말함(안 제2조)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·시행하고, 위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8조).
- 다.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대상가족을 위해 필요한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,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라. 위기청년에 대하여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, 건강관리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).
- 마.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- 바.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

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(안 제17조).

##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규정하여, 청년들에 대한 공정한 출발선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통해 모든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사회·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청년"이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
  - 2. "위기청년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 - 가. 가족돌봄청년: 고령,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)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
    - 나. 고립·은둔청년: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일정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학업수행 등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
    - 다. 자립준비청년: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

호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

- 라. 그 밖에 사회·경제·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, 학업 수행,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 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, 위기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 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기청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위기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기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
- 제5조(위기청년 지원 기본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위기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- 2. 위기청년 조기 발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
- 3. 위기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- 4.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 의 지원체계 구축·운영
- 5.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・연구・교육・홍보 및 제도개선
- 6.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
- 7.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
- 8. 그 밖에 위기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청년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청 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 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④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,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가족돌봄서비스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 이 고령,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(이 하 "돌봄대상가족"이라 한다)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

-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종류, 지원대상·기준·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청년이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의 지급 대상ㆍ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상담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로상담,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이 생계와 가족 돌봄, 고립·은둔 등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과 교육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
- 2.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
- 3. 직업소개 및 관리
- 4. 그 밖에 위기청년의 직업체험 등에 필요한 사항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을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건강관리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이 건강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·상담·치료, 영양·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의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자립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의 자립에 필요 한 주거·생활·문화·의료·정서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경제·법률· 문화 등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위기청년 지원센터의 설치・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
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기청년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기청년 지원
- 2.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지역사회 지원과의 연계 · 협력
- 3. 위기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4. 위기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- 5. 위기청년 자조모임 지원
- 6. 위기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- 7. 위기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- 8. 그 밖에 위기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관련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, 종사자의 자격,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) 19세 미만인 사

람으로서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지원대상자가 된다.

- 제18조(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5 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(이하 "맞춤형 통합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지원센터에의 연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에게 위기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  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장
  -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
  - 3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
  - 4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
  - 5.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

-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비밀유지 의무) 위기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1조(협력체계 구축)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 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2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 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3조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위기 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24조(벌칙)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5조(과태료)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위기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